

1. 개정이유

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(2020. 4. 7. 일부개정, 2020. 10. 8 시행)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여 신청서 등 서식을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 (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)
- 나.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 (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11호 신설)
- 다.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(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12호 신설)
- 라.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(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1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9조의3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)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(기업용) 및 제10호(구매기관용) 서식과 같다.

제9조의4(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)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.

제9조의5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)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
제14조의2(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)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.

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(기업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경우 √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
지원과제		[] 창업과제		[] 일반과제	
				[] 소액과제	
시범구매 신청제품	신청제품명 (규격·모델)	※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하는 모든 규격·모델 기재 (인증서·지정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)			
	세부품명 (세부품명번호)	※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	물품목록 정보체계	※ 대분류, 중분류까지 작성	
	제품분야		산업기술 표준분류		
	생산방식	[] 직접 [] 위탁	유통경로 (중복가능)	[] B2B (기업)	[] B2C (일반소비자)
기술개발제품 인증·지정	인증·지정 명칭				
	인증·지정 번호		인증·지정 유효기간		
신청기업	기업명		설립일	년 월 일	
	사업자 등록번호		법인 등록번호		
	사업종류	주업태		주종목	
	기업규모	[] 중기업		[] 소기업	[] 소상공인
	재무현황	자본총계 백만원	부채총계 백만원	매출액 백만원	
	주 소	()			
공공기관 납품현황	납품기관	전체제품 외 개 기관		신청제품 외 개 기관	
	납품실적	전체제품 백만원		신청제품 백만원	
납품희망기관 (창업·일반과제만 작성)		※ 최대 5개 기관 선택 가능			
신청기업 담당자	대표자	성명 (생년월일)	연락처	전자우편	
	책임자	성명 (생년월일)	연락처	전자우편	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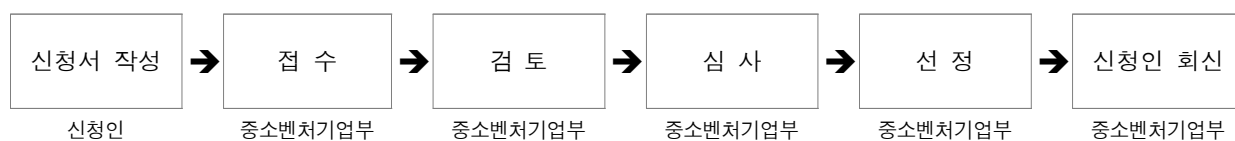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업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2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 각 1부 3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항의 신청요건에 관한 증빙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(구매기관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경우 √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
기관 현황	기 관 명			기 관 장	
	기관코드	※ 행정표준코드에 따른 기관코드 7자리		홈페이지	
	기관 형태	정부 기관	☐ 국가기관 ☐ 지방자치단체(광역) ☐ 지방자치단체(기초) ☐ 시·도교육청 ☐ 국가의료기관		
		공공 기관	☐ 공기업 ☐ 준정부기관 ☐ 기타공공기관 ☐ 지방공기업 ☐ 지방의료원 ☐ 기타 특별법인		
	기관주소		()		
제 도 담 당 자	성 명			직 위	
	부 서 명			전자우편	
	연 락 처 (내 선)			휴대전화	
시범구매 목표금액 (신청연도)		※ 목표(예상)금액을 원 단위까지 작성			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으로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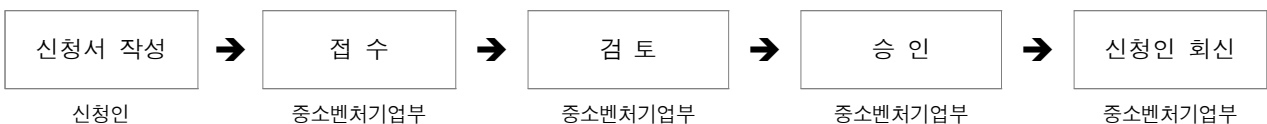
신청인(신청기관의 장):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참고사항	제도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경우 √ 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
현장검증 신청제품	신청제품명 (규격·모델)	※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하는 모든 규격·모델 기재 (인증서·지정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)			
	세부품명 (세부품명번호)	※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	물품목록 정보체계	※ 대분류, 중분류까지 작성	
	제품분야		산업기술 표준분류		
기술개발제품 인증·지정	인증·지정 명칭				
	인증·지정 번호		인증·지정 유효기간		
신청기업	기업명		설립일	년 월 일	
	사업자 등록번호		법인 등록번호		
	사업종류	주업태		주종목	
	기업규모	[] 중기업		[] 소기업 [] 소상공인	
	재무현황	자본총계 백만원	부채총계 백만원	매출액 백만원	
	주소	()			
현장검증 신청사항	검증희망 공공기관		검증 필요기간	00일	
	검증내용	※ 현장검증 핵심 내용을 기술			
신청기업 담당자	대표자	성명 (생년월일)	연락처	전자우편	
	현장검증 책임자	성명 (생년월일)	연락처	전자우편	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
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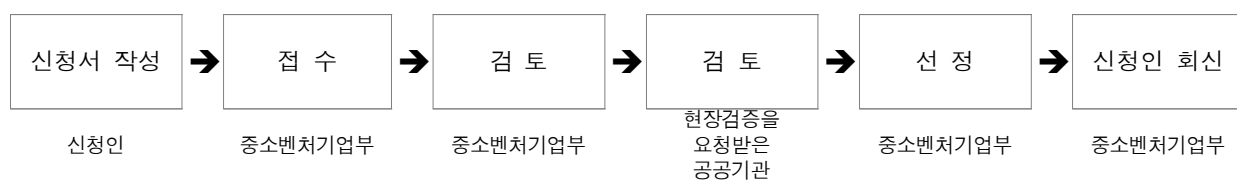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첨부서류	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기업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2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[]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
[]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

전담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명		
	대표자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	전화번호	
신청내용	설립목적		
	설립 연월일	설립근거	
	주요 업무내용		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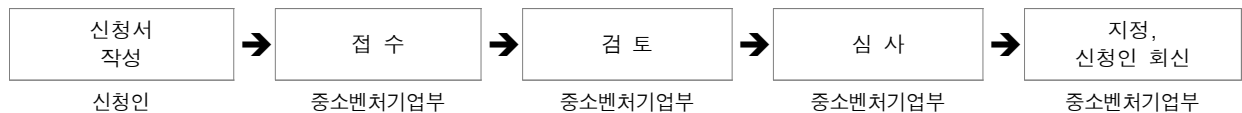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판로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개요	상생협약명		
	지원유형 [] 혁신성장과제 [] 소재부품과제 [] 역량강화과제		
	제품구분 [] 물품 [] 용역 [] 공사	제품명(세부품명번호)	
	협약기간		

주관기업	업체명	대표자명
	사업자(법인)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업종(KSIC코드)
	주소	
	책임자명/직위	부서
	연락처	전자우편

협력기업	업체명	대표자명
	기업유형 [] 멘토기업 [] 소재부품기업 ([] 중소기업 [] 대기업)	
	사업자(법인)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업종(KSIC코드)
	주소	
	책임자명/직위	부서
	연락처	전자우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주관기업)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(협력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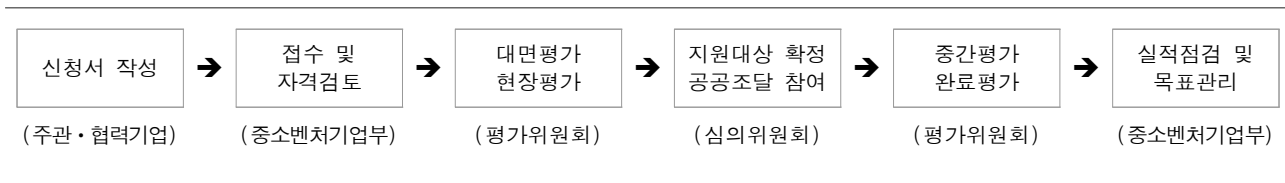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귀하

제출서류	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2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협약서 3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료
------	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3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참여 신청서)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(기업용) 및 제10호(구매기관용) 서식과 같다.
<신 설>	제9조의4(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)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.
<신 설>	제9조의5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)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<신 설>	제14조의2(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)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.